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5
----------	---------

발의연월일 : 2021년 월 일

발 의 자 : 정정희, 김현희, 김용원, 송순효
황영호, 이의걸, 김동협, 이종숙
박성호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2)

다. 운영 위탁기준 정비(안 제5조)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 제17조의5)

- 설치·구성·임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4조」, 「제30조」

나. 협조부서: 교육청소년과

다. 입법예고: 2021. 2. 19. ~ 2. 24.

결 과: 의견제출(붙임 참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그 밖의 도서관의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을 통해 구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도서관”을 “도서관의”로,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의 제목 중 “보 칙”을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소장자료의 폐기·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교육·문화계 및 도서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관계 공무원 1명
4. 작은 도서관장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명

③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3(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과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육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p> <p>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p> <p>3.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4. “수탁기관”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 <p>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p> <p>3. 그 밖의 도서관의 용어는 법을 따른다.</p>

<신 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
시장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
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
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제3조의2(책무) 서울특별시 강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도서관을 통해 구민이 자
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
근하고 이용할 수 있기 위한 시
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

----- 도서관의 -----

-----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신 설>

-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소장자료의 폐기·제적, 불용 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

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강서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 2. 교육·문화계 및 도서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 3. 관계 공무원 1명
- 4. 작은 도서관장 2명
-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신 설>

<신 설>

람 1명

③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 않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3(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과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신 설>

<신 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